

정세와 투쟁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4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2019.5.20.(월)

02-497-7888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www.kptu.net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의 유래와 의미



▲93년 태국 케이더회사의 화재로 타다 남은 장난감들 전시

지난 93년 5월 심슨가족 인형을 만들던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88명의 젊은 노동자(그 중 174명이 여성노동자)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것은 공장관리자가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갈까봐 밖에서 공장문을 잠그고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선진국 어린이들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라는 각성이 있었다.

그리고 96년 4월28일 유엔의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장 앞에서 국제자유노련 대표자들은 촛불을 밝혔다.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병들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외침은 전 세계 70개국으로 퍼져나갔고,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4월28일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추모의 날로 정한 나라는 캐나다로, 1991년에 입법되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차원에서 4월28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후, 이 날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 채택한 나라는 스페인으로 1999년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ILO 등 전 세계 노동운동 단체와 기구는 4월28일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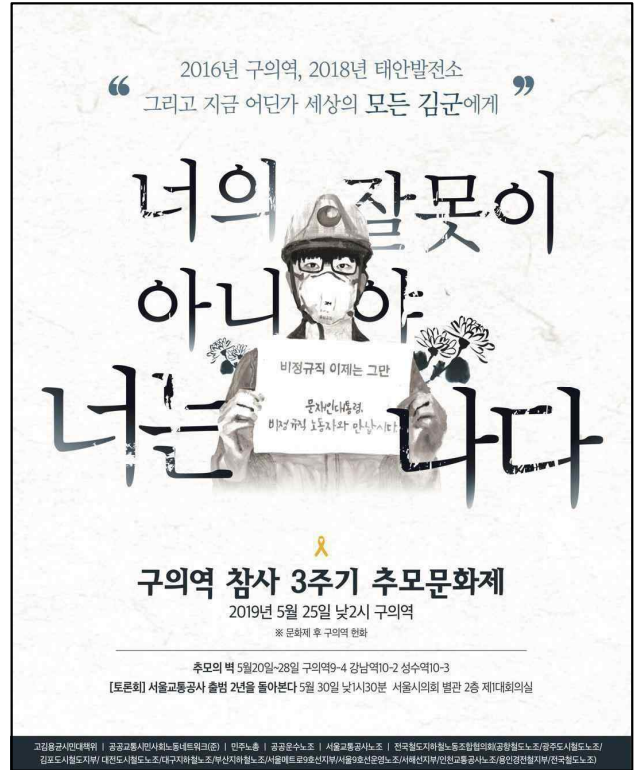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1만여 건 이상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됐다. 아르헨티나·벨기에·브라질·도미니카공화국·룩셈부르크·파나마·페루·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대만 등 13개 국 경우 국가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이날 죽은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 안전화를 갖다놓고 촛불을 올려놓으며,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5.20(월)~31일(목) 구의역 3주기 추모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투쟁 진행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사망한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노조에서는 매년 구의역 사고를 추모하며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주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10일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동지의 투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동지도 여전히 하청 노동자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민주노총과 우리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권리 확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4/22일 11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만신창이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고 김용균동지의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 4월22일 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대부분 전면 개정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8년만의 법 개정, 위험 외주화 금지로 산재사망 감소 등 정부가 강조하고 약속한 내용은 온데 간데 없다.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자본, 수구야당, 경제부처의 흔들기로 만신창이가 된 법이 하위령에서 더욱 후퇴했다.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히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 금지도 아닌 도급승인에서도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히청 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은 하위 법령에 담겨 있는데,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언급했던 위험 업무 도급 금지 원칙과 법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작업 중지 권한 등이 모두 후퇴했다. 이법에 의하면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도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 이것저것 다 빠진 보호조치 적용대상

28년만의 법 개정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호범위 확대로 도입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보호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이 제외된다. 최초 고용 시 교육으로 되어, 사업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교육수료를 요구하고, 교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전철을 밟게 될 우려도 있다. 앞에서는 보호범위 확대이고 하위법령에서는 빼고 또 빼기만 하는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례로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미끄러짐·넘어짐·떨어짐·끼임·충돌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지속적인 사고가 보고되며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취급으로 요통 등 건강상의 위험이 이미 알려진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드라마·극예술 공연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작업해 사고가 빈번하다. 장시간 근무가 팽배한 예술 노동자, 운전 작업자의 위험요소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입차주 형식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학원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 미용업·세탁업같이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개인서비스업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 근골격계 위험이 높은 간병 노동자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 목적에 맞게 하위법령은 현실 노동상태와 위험 위주로 판단

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가 갈수록 세분화하고 확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용대상 직종을 선정한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2항과 3항에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협소하게 축소시킨 작업 중지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만든 기준에도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해당작업'과 동일작업'으로 내용을 축소시켰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 아니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작업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 예고안에는 작업 중지 해제요청을 하기 전 관련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라고 한다. 무엇보다 다 심각한 것은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전대책 수립이 적정한지 현장 확인과 작업자 인터뷰 등의 과정을 고작 4일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편향적 해제가 심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가 하다보니 인명피해가 없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제약해왔다. 발생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의 탄압을 해왔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으로부터 대피할 권리가 '작업 중지권'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여전히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재사망 절반감소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현장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성 강화 확대해야 한다. 빈껍데기뿐인 산안법 하위 법령을 규탄하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2의 김용균 사태를 막으려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돼야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지만,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 산재사망률 OECD 1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최소한 법에 규정된 사항만이라도 지키라는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54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고 같은 기간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4만 명이 넘는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대형참사에도 처벌은 여전히 솥방망이

한국은 산재사망과 시민재해 책임자에게 솥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로 공사 사장과 기업은 무죄, 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병원은 벌금 800만원,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전 옥시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에 사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지켜내자

산재사망은 특히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이고 원청 사망자(2명)의 18배 달한다. 반면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30개 기업에는 대우건설·현대중공업·현대제철·한화케미칼 등 산재 다발 업종에 해당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및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사업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노동자도 포함한 노동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적용대상자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한다. 경영책임자와 기업법인은 물론 관련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 사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일반 형법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양벌규정이 없어 기업을 처벌하지 못한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특수한 분야의 형사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계속되는 현실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무척 어렵다. 기업을 움직이는 경영진과 주주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구의역 3주기 추모주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투쟁

1. 구의역 3주기 추모기간

1) 추모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 5월 25일(토) 14시

- 구의역 1번 출구 앞

2) 추모의벽

- 5월 20일(월)~28일(화)

- 구의역9-4, 강남역10-2, 성수역10-3 승강장

3) 대신민 선전전

- 5월 23일(목)

- 구의역, 강남역, 성수역사 내

4) 토론회

① 구의역 3주기, 반복되는 청년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토론회

- 청년전태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전태일기념관

- 5월 27일 10시 / 전태일기념관

②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본다

- 5월 30일 14시 / 서울시의회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투쟁

1) 투쟁 목표

- 하위법령에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 문재인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재사망 절반감소의 허구성 폭로 및 규탄

- 하위법령 개정 투쟁을 정책적 대응을 넘어 대중투쟁으로 전개

2) 농성투쟁

- 일시 : 5월 20~31일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및 서울 청사 앞

- 방식 : 1인 시위, 필리버스터, 선무방송, 릴레이 기자회견

- 농성담당 : 5월 21일(화), 30일(목) 공공운수노조 담당

3) 집단 의견서 조직 및 대중사업화

- 가맹조직 혹은 사업장별 의견서 제출 : 지부, 지회, 분회, 개인 등

- 의견서 제출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집단 서명 조직